

임원선거관리규정

제정 2015. 01. 13
개정 2015. 02. 10
개정 2022. 03. 24
개정 2024. 02. 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회칙에서 정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축사회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협조요구를 받은 사무국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사무국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행위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서 계산되어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절상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구성 및 해산) ① 위원회는 해당 임원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설치하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이사회 의 결정에 따라 해산일자를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현직에서 가장 가까운 전임회장 순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후보등록을 하려면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직무) ① 위원회 업무의 주요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선거공고
2. 후보자 등록관리

3. 선거인명부 관리
 4. 선거운동 관리
 5. 선거홍보물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당선인 결정
 8. 선거부정에 관한 사항의 심사·처분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에 각 호의 사항을 건축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선거일
 2. 후보자의 등록 및 절차
 3.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
 4.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 2 장 선거인

제6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정회원을 말한다.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효력) ① 정회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정회원이 아니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정관 제9조 제4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나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자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선거인명부)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때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선거인명부의 공고내용과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우편, 기타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1회 공지한다.

④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은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5일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 전에 확정한다.

⑦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의 발급 신청을 한 때에는 사본으로 교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의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3 장 후보자

제9조(후보자 등록) ① 회장 또는 감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한내에 제2항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된다.

②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
2. 입후보 소견서
3. 이력서
4. 선거공보 원고
5. 기탁금
6. 서약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접수하고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 등록신청기한까지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일시 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기탁금) ① 기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선거 : 3백만원
2. 감사선거 : 1백만원

② 기탁금은 위원회 운영, 투표용지 인쇄,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③ 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을 정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해 입후보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우선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선거비용 정산 잔액의 전액
2.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탁금 전액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건축사회의 수입으로 한다.

1.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3. 후보자 등록이 무효된 경우

제10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등록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사항 및 등록변경사항을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공고문
2. 입후보 소견서
3. 이력서
4. 선거공보 원고

제12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당해 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3조(현직임원의 입후보자 등록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후보자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회장 또는 감사가 그 직에 다시 입후보자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고, 선거종료 후 익일부터 그 직에 복귀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기간 및 범위) ① 제9조에 의하여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한자는 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건축사회 또는 건축사회 산하기구가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여
2. 선거사무소 개설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3. 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운영
4.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
5. 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등 SNS를 통한 홍보
6.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착용

8.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② 제1항 제4호의 전자우편과 제5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동안 후보자(관계인을 포함한다) 1인당 총 10회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선거홍보) ① 선거홍보의 종류는 선거공보, 회원용 정기간행물광고, 후보자 토론회, 전자매체 홍보 등으로 한다. 다만, 선거홍보의 확대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 토론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건축사회 산하기구가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선거공보, 회원용 정기간행물광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기탁금 외에 후보자 등이 별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공고시 선거공보의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홍보를 후보자별로 동일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후보자별 개별 선거홍보는 할 수 없다.

⑦ 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이전에 선거인에게 일괄 발송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또는 기타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된다.

1. 다른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기부, 접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도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4.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운동원이 당해 후보자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협회 정기간행물에 후보자에 대한 집필, 논평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성격의 보도와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6. 대외적으로 건축사 또는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7. 제3자나 단체 및 집단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시키는 행위

8. 그 밖에 위원회가 허가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행위

제16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위반 사실과 시정 사실을 투표실시전 선거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병과할 수 있다.

1. 불문 또는 기각
 2. 주의
 3. 경고
 4. 후보등록무효(등록취소를 포함한다)
 5. 당선무효(당선취소를 포함한다)
 6. 투표무효(투표취소를 포함한다)
 7. 선거무효(선거취소를 포함한다)
 8. 선거권 박탈
 9.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
- ③ 제2항의 처분과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효력이 있다.
1. 후보등록무효는 선거 3일 전일까지
 2.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는 취임일 전일까지
 3. 투표무효는 선거당일
- ④ 위원회가 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때에는 자료제출, 청문 등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처분이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처분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⑦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직무 또는 업무 수행이나 참여, 진술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선거 및 투표

- 제17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직접, 비밀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선거인 1인 1표에 의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을 정하여 실시하되, 그 기간은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단, 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투표, 거수, 기립, 이의 유무, 박수 등의 방법 중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1. 투표용지를 이용한 기표방법
 2.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방법
- ②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투표 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의 비밀과 본인인증 절차 등 직접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투표 및 개표 과정이 검증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소) 위원회는 선거 실시전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투표방법으로 실시할 경우 투표소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19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의 양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온라인 투표의 경우 제18조에서 정해진 웹 사이트 전자서식으로 한다.

② 기호추첨은 입후보등록마감 후 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추첨한다.

③ 투표용지는 기호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되, 동명인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하고, 위원회는 선거실시 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와 직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투표의 경우 기호에 따라 전자서식이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20조(투표절차) ① 투표는 투표장소에서 위원회 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아래 선거인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용지에 ㉸표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온라인투표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정해진 웹 사이트에서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따라 투표하며, 선거인은 자기의 투표행위에 대하여 투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참관) ① 참관인은 투·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3인 이내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한다. 다만, 참관인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관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6 장 개표 및 당선

제22조(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참관인의 입회아래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개표된 투표용지 및 투표결과 데이터는 당선확정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기한다.

제2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지 명확한 것
6. 훼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가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③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1. 제18조의 온라인투표 사이트가 이상이 없음에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2. 제20조제3항의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3. 온라인투표 사이트 상의 문제로 선거인의 10% 미만이 기표가 되지 아니한 투표. 이 경우 차점자에게 해당 득표수를 합산하여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당선확정) ① 당선확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이 경우 유효투표의 20%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②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을 확정한다.

③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④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⑤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 7 장 재 선 거

제2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회가 선거무효를 결정하였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때
 4. 단일후보에 대한 신임투표시 득표수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미달일 때
- ②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 차점자를 당선자로 정하지 아니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③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선거에 이의가 있는 낙선거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5.01.13)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10)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24)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입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입회년월일	
사무소명			
연 락 처	(사무소) (휴대전화)		
<p>상기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선거(회장·감사)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첨부서류 : 1. 입후보 소견서 2. 이력서 3. 선거공보 원고 4. 기탁금 5. 서약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당 선 증

사무소

성 명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임원선거(회장 ·
감사)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무소명 :
- 주 소 :

1. 상기 본인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임원선거(회장, 감사)에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입후보 등록 신청시 제출한 일체의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으며, 업무상 비위나 사회적 지탄 등의 사실이 없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이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 본인은 정관, 회칙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공명 선거를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고, 선거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본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건축사회로부터 교부받거나, 지득(知得)한 회원 개인정보는 선거운동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선거기간 종료 즉시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개인정보보호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장선거 입후보자
 감사선거

①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임원선거(회장, 감사)에 필요한 후보자등록자의 인적 사항 등의 조회를 통해 피선거권 결격사유 확인 및 선거인의 알 권리 확보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사진, 사무소명 및 주소, 전화 번호, 학력, 경력, 자격증명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

- 수집한 정보 제공대상
 - 임원선거(회장, 감사)의 선거권자인 정회원에 제공

- 보유·이용기간
 - (이용기간) 임원선거(회장, 감사) 선거사무 종료시까지
 - (보유기간) 대한건축사협회 문서규정에 의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선거권 자격 미확인으로 후보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회장선거 입후보자 ①

감사선거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인명부 발급신청서

선거명	사본의 종류	비고
	<input type="checkbox"/> 일반 사본 <input type="checkbox"/> 전산자료 복사본	

20 년 월 일 실시하는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임원선거(회장, 감사)에 있어 「임원선거관리규정」 제8조제7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발급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운동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선거운동기간 종료 즉시 반환하고 기타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회장선거 입후보자 (인)
 감사선거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신청인은 사본의 종류(일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